KOSHA GUIDE

C - 97 - 2022

타워크레인 설치·조립·해체 작업계획서 작성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, 제142조(타워크레인의 지지) 및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절(타워크레인) 등의 규정에 의하여 타워크레인 설치·조립·해체작업을 안전하게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건설현장의 고정식 타워크레인 설치·조립·해체 작업계획서 작성에 적용하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고정식 타워크레인"이라 함은 콘크리트 기초 또는 고정된 기초 위에 설치 된 타워크레인을 말한다.
 - (나) "사업주"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.
 - (다) "텔레스코핑(Telescoping) 작업"이라 함은 마스트를 연장 또는 해체작업을 하기위해 유압장치 및 실린더가 동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.
 - (라) "텔레스코픽 케이지(Telescopic cage)"라 함은 마스트를 연장 또는 해체 작업을 하기위해 유압장치 및 실린더가 부착되어 있는 구조의 마스트를 말한다.
 - (마) "정격하중"이라 함은 타워크레인의 권상하중에서 훅, 그래브 또는 버킷 등 달기기구의 하중을 뺀 하중을 말한다.